

1. 개정이유

‘작업용 구멍의’ 또는 새로 개발된 제품 중에 ‘어선용 구멍의’의 안전 기준 및 도입목적과 부합한 제품을 ‘어선용 구멍의’ 항목에 추가하여 조업 중 신체 피로감 및 그물 걸림 등을 해결하고, 작업복 대신 입을 수 있는 형태로서 구멍조끼 착용률 향상 및 안전예방을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외투형(긴팔형, 반팔형, 조끼형) 외에 작업복 대신 입을 수 있는 일체형(긴바지형, 반바지형)도 추가하여 어업인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어선용 구멍의” 기준 개정(안 별표 1 88. 어선용 구멍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어선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88. 어선용구멍의 가. 제품시험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품시험

시험항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비고
1) 외관 검사	사양서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가) 사양서와 같을 것. 나) 팽창식(膨脹式)의 경우에는 기실(氣室)의 외측에 기실을 보호하는 천이 부착되어 있을 것. 다) 작업에 위험 우려가 있는 끈이 늘어져 있거나 부속물이 돌출하지 아니할 것. 라) 형태는 외투형(긴팔형, 반팔형, 조끼형) 및 일체형(긴바지형, 반바지형) 일 것. 마) 역반사재를 부착할 것.	외투형 및 일체형 외의 목도리형, 허리벨트형 등은 제외한다. 역반사재는 형식승인제품으로 어선설비기준 별표3에 따라 부착하여야함
2) ~ 13)	<생략>		

부 칙 <2019-000호, 2019.00.00>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1. ~ 87. (생략) 88. 어선용 구멍의 가. 제품시험				[별표 1] 1. ~ 87. (현행과 같음) 88. 어선용 구멍의 가. 제품시험			
시험 항목	시험 방법	판정기준	비고	시험 항목	시험 방법	판정기준	비고
1) 외관 검사	사양 서와 대조 하여 확인 한다.	가) 사양서와 같을 것. 나) 팽창식(膨脹式) 의 경우에는 기실 (氣室)의 외측에 기실을 보호하 는 천이 부착되어 있을 것 다) 작업에 위험 우려 가 있는 끈이 늘 어져 있거나 부속 물이 돌출하지 아 니할 것. 라) 형태는 외투형(긴 팔형, 반팔형, 조 끼형) 일 것 마) 역반사재를 부착 할 것	외투형 외의 목 도리형, 허리벨트 형 등은 제외한다. 역반사재 는 형식 승인제품 으로 어 선설비기 준 별표3 에 따라 부착하여 야함	1) 외관 검사	사양 서와 대조 하여 확인 한다.	가) 사양서와 같을 것. 나) 팽창식(膨脹式) 의 경우에는 기실 (氣室)의 외측에 기실을 보호하 는 천이 부착되어 있을 것 다) 작업에 위험 우려 가 있는 끈이 늘 어져 있거나 부속 물이 돌출하지 아 니할 것. 라) 형태는 외투형(긴 팔형, 반팔형, 조 끼형) 및 일체형 (긴바지형, 반바 지형) 일 것 마) 역반사재를 부착 할 것	외투형 및 일체 형 외의 목도리 형, 허리 벨트형 등은 제 외한다. 역반사재 는 형식 승인제품 으로 어 선설비기 준 별표3 에 따라 부착하여 야함
2) ~ 13)	<생 략>			2) ~ 13)	<현행 과 같 음>		
나. ~ 라. (생략) 89. ~ 158.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89. ~ 158. (현행과 같음)			